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8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4.

3. 회부연월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9조의4(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u> ① <u>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u> ②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u>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③ 교육부장관은 청소년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 ⑤ 교육계획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 및 제9조의2¹⁾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도박 중독의 예방 등 학생의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이 연간 16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온라인 도박 성행하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또

1)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생 략)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한 심화되고 있음.

[청소년 도박 경험률 비교]

(단위 : %)

구분		2024년				2025년			
		평생경험		지난 6개월 지속 경험		평생경험		지난 6개월 지속 경험	
		사례수	있다	사례수	지속하고 있다	사례수	있다	사례수	지속하고 있다
전 체		(13,368)	4.3	(565)	19.1	(13,481)	4.0	(535)	19.4
성 별	남자	(7,031)	5.8	(414)	16.2	(6,956)	4.8	(340)	20.7
	여자	(6,337)	2.6	(151)	25.8	(6,525)	3.1	(195)	17.5
교단별	초등학생	(4,628)	3.4	(164)	25.1	(4,498)	3.6	(161)	22.6
	중학생	(4,183)	4.3	(174)	16.4	(4,541)	4.3	(184)	20.2
	고등학생	(4,557)	5.0	(227)	17.3	(4,442)	4.1	(190)	15.9

출처: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이에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별도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도박 및 도박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신 건강을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²⁾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동일하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시책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무부처 및 관련 시책이 이원화되고 동일한 취지의 교육이 중복 실시됨에 따라 ①시책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떨어지고, ②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 시책에 따라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 중복 규정 - 도박예방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같은 의원(윤영석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26.5.4.)한바,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에 중복규정하기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할 필요
○ 시도교육청(서울, 강원, 전남, 충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에 위원회의 시책 수립·시행을 기규정하고 있어 중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도박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를 ‘중앙행정기관 및 도박문제 예방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로 수정(안 제①항) - 특정 실태조사의 결과 반영을 법률에 개별 명시할 경우, 조사체계 변경 및 신규조사 도입 시 법체계 경직성 초래 우려(안 제③항) -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 결과 반영은 일반적 절차로 법률에 규정 불필요(안 제④항)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87